

중국 BIT상 최혜국대우조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에 관한 연구

장만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하현수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Most-Favored-Nation clause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China's BIT

Man Zhang^a, Hyun-Soo Ha^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19, Revised 18 March 2019, Accepted 25 March 2019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on the BITs concluded by China and examines the attitudes of China on the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ISDs by period as the scope of arbitration increases. Moreover,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would be exposed i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applies to ISDs and then also suggested solut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f the Chinese government strictly restricts the applicable expans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by considering only the position of the capital importing country, it implies a contradiction against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arbitration system related to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Of cours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hinese investors investing abroad, expan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he ISDs procedure unconditionally may have a negative impact under China's dual status of being a capital-importing country and a capital-exporting country. Therefore, China shoul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he completion of the local remedy for the host country in cases of BIT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or amended, and also clearly define that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should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into BITs already concluded as an exception of applicability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Keywords: BIT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ISD

JEL Classifications: F02, F51, F53

^a First Author, E-mail: zhangman8@hotmail.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hhs004444@jbnu.ac.kr

© 2018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국제투자 분야에서 국가 간에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T)는 통상 투자자유치국이 동등한 사항에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에게 부여한 또는 부여할 특혜 및 혜택을 제3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최혜국대우관련 문제는 2000년 Maffezini 사건¹⁾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라 한다)에 대한 확대적용 문제가 등장한 후, 외국인 투자자가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제3국 협정에 포함된 보다 용이거나 유리한 제소요건이나 관할범위 등을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하여 원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야기되었다(Kim Seok-Ho, 2013).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대한 확대적용 문제는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중국은 1982년 스웨덴과 최초로 BIT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BIT를 체결하여 2016년 현재 104건을 발효시켰으며 이들 모두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BIT에서는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아, ISDs에 최혜국대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에 의한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대한 적용 여부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Suh Chul-Won(2008)은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한 사례 및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하여 최혜국대우조항과 투자분쟁해결절차 간의 불명확한 쟁점들에 대

해 설명하였다. KAang Seung-Kwan(2010)는 Siemens v. Argentina 사건과 Wintershall v. Argentina 사건을 비교·분석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의 확대 적용 문제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ISDs에 대한 최혜국대우조항의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ark Seon-Uk(2010)은 국제투자중재에 있어서 최혜국대우규정 해석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확대 적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Kim Yeu-Sun과 Oh Young-Gi(2010)는 국제투자법상 최혜국대우조항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최혜국대우조항의 확대 적용과 관련한 긍정 또는 부정적 판정사례를 통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 적용문제를 분석하여 한국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관한 정책적 제시하였다. 그리고 Kim Seok-Ho(2013)는 국제투자조약상 분쟁해결조항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국제중재판정의 찬·반 입장을 구분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연구물들은 대부분 최혜국대우조항을 ISD절차에서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을 노출하지,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기체결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조항이 ISD절차에 적용되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기체결한 BIT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중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ISDs에 최혜국대우조항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에 노출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대해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Emilio Agustí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January 25, 2000.

II.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 최혜국대우조항의 확대 적용

1. 최혜국대우조항 확대 적용 문제의 기원

2000년 Maffezini 사건은 최혜국대우조항의 투자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확대 적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유발시켰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투자자인 Maffezini와 투자유치국인 스페인 간의 투자분쟁으로, 1991년 스페인-아르헨티나 BIT 제10조에 따르면 Maffezini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라 한다)에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먼저 국내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고 제소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기기간을 두었다. 그런데 Maffezini는 기본협정 상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제3국 협정인 스페인-칠레 BIT의 제 10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원에 제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스페인 국내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분쟁을 바로 ICSID에 중재 신청하였다. Maffezini의 주장은 ICSID 중재판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본 협정 하에서의 모든 사항”이라는 표현은 그 적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ISD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Maffezini가 기본협정상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제3국 협정을 통하여 더 유리한 ISDs를 원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였다.²⁾

2004년 Siemens 사건³⁾에서도 중재판정부는 Maffezini 사건의 관점을 다시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Siemens가 근거한 기본

협정(아르헨티나-독일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의 내용인 ‘투자자와 관련된 행위들’이라고 하는 기준은 Maffezini 사건에서의 스페인-아르헨티나 BIT의 ‘본 협정 하에서의 모든 사항’에 비하여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대우’와 ‘행위들’이라는 용어는 분쟁해결절차를 충분히 포함한다고 판정하였다.⁴⁾ 그 결과 Siemens는 기본협정에 규정된 아르헨티나 국내법원에서의 18개월 간의 대기기간을 피해 투자분쟁을 ICSID에 직접 중재 신청할 수 있었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2004년 Salini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⁵⁾ 2005년 Plama 사건⁶⁾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최혜국대우조항이 ISD 절차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Plama 사건의 기본협정(불가리아-사이프러스 BIT)에 따르면, 보상액과 관련한 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인 불가리아의 현지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에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기타 투자분쟁은 국내법원에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프러스의 투자자인 Plama Consortium은 불가리아의 현지구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불가리아-핀란드 BIT를 원용하여 분쟁을 ICSID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중재는 계약 사항에 속하며, 기본협정에 규정한 UNCITRAL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은 계약 쌍방 간의 합의를 거친 것이다. 중재조항 자치원칙에 따라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한다는

2) Emilio Agusti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January 25, 2000, paras.38-64.

3) Siemens A. G.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August 03, 2004.

4) Siemens A. G.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August 03, 2004, para.103.

5) Salini Construttori S.p.A. and Italstrade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ICSID No.ARB/02/13),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November 29, 2004.

6)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No. ARB/03/24),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February 08, 2005.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협정의 ISDs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⁷⁾

상기 두 사건을 제외하고 Camuzzi 사건,⁸⁾ Gas Natural 사건,⁹⁾ Tecmed 사건,¹⁰⁾ Grid 사건,¹¹⁾ 그리고 Vivendi 사건¹²⁾에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확정할 때 ISDs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Suez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이 ISDs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¹³⁾

2. 최혜국대우조항 확대 적용의 요건

BIT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을 ISDs에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기본협정 약정원칙이다. UNCITRAL이 제정한 《최혜국대우조항에 관한 초안》(Draft Articles on MFN Treatment Clauses) 제4조는 최혜국대우조항은 계약국 간에 체결한 협정상의 조항이고, 이 조항에 따라 일방

계약국이 타방 계약국의 의무를 부여하면 약정한 범위 내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과 투자유치국 간에 체결한 기본협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동종제한 원칙이다. 동종제한 원칙이란 동일상황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 협정에서 부여된 모든 대우를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Kim Yeu-Sun과 Oh Young-Gi 2010). 예를 들어, 계약당사국 간에 관세동맹과 관련한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은 투자협정에서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하여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종제한 원칙은 현대 협정에서 부여해주는 특혜활동과 대상의 범위라고도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혜국과 확정관계가 있는 인적 혹은 물적 범위에 한정된다. 또한 동종제한 원칙은 최혜국대우조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제, 국내법원의 판례, 국가관행, 학설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종제한 원칙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인다. 동종제품의 개념을 볼 때 관세분류, 본질적 특성에 따른 구분, 목적 및 용도에 따른 구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되고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Kim Kyung-Bae, 2010). 그러므로 동종제한 원칙을 적용여부는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

셋째, 더 나은 대우원칙이다. 더 나은 대우원칙은 국제 관계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로 강조한 것이어서 최혜국대우조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인용할 때 마땅히 더 나은 대우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확대 적용하는 전제는 기본협정과 제3국 협정에서의 절차적 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우열을 비교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투자법상 더 나은 대우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명문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재량적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Kang Seung-Kwan, 2010).

7)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No. ARB/03/24),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February 08, 2005, para. 212.

8) *Camuzzi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2.

9) *Gas Natural SDG S. A. v. Argentinian*, ICSID Case No. ARB/03/10.

10)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 A. v. Mexico*, ICSID Case No. ARB (AF)/00/2.

11) *National Grid plc v. The Argentine Republic*, Decision On Jurisdiction dated 20 June 2006, ad hoc arbitration under UNCITRAL Rules.

12)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13) *Suez, Sco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Interagua Servicios Integrales de Agua S. 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7),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May 16, 2006.

III. 중국 기체결 BITs상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확대 적용

1. 중국 BITs상 ISDs의 특징

중국은 기체결한 104건의 BIT 중 1982년 중국-스웨덴 BIT, 1984년 중국-노르웨이 BIT, 1985년 중국-태국 BIT, 1992년 중국-투르크메니스탄 BIT에서는 ISD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건의 BIT에 규정된 ISD절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국 구제완료에 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이 1990년 이전에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현지국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분쟁을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1985년 중국-싱가포르 BIT 제13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6개월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의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0년 이후 중국은 타국과 체결한 일부 BIT에서 현지국 구제절차에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1년 중국-헝가리 BIT, 1993년 중국-벨로루시 BIT와 같은 일부 BIT는 “일방 계약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과의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수정된 중국-스페인 BIT 제9조 제1항에서도 “일방 당사국과 타방 계약국의 투자자 간에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서면방식으로 협상이 요청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호적 해결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현지구제 수단의 사전 이용과 관계없이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수정된 중국-우즈베키스탄 BIT는 외국인 투자자는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따른 투자유치국의 구제 수단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¹⁴⁾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연합 BIT 제9조 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행정구제, 사법구제, 그리고 국제중재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나는 투자유치국의 현지 행정심판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는 분쟁을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중재를 신청하기 전 필수 절차인 투자유치국의 행정구제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방식을 확대하였다. 중국이 초기에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수용 보상액 관련 분쟁에 대해 ICSID를 통한 기관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분쟁은 당사자 쌍방 간 합의한 임시중재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한 BIT는 대부분 분쟁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 하지만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는 단지 임시중재만을 규정하였고, 1996년 중국-사우디아라비아 BIT는 ICSID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03년 중국-독일 BIT와 같은 일부 BIT는 분쟁 당사자가 임시중재기관 설치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CSID 중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중국-우즈베키스탄 BIT와 같은 일부

14) 2011년 중국-우즈베키스탄 BIT의 규정과 비슷한 BIT는 중국-몰타 BIT, 중국-포르투갈 BIT, 중국-체코 BIT, 중국-스페인 BIT, 중국-독일 BIT, 중국-마다가스카르 BIT, 중국-적도 기니 BIT, 중국-튀니지 BIT, 중국-캐나다 BIT, 중국-쿠바 BIT 등이 있다.

15) 1994년 중국-칠레 BIT.

BIT에서는 기관중재와 임시중재를 동시에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중재와 임시중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Ha Hyun-Soo, 2013).

셋째, 국제중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이 바베이도스와 BIT를 체결하기 전에 ISD 조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BIT는 단지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다.¹⁶⁾ 그러나 1998년 7월 중국이 바베이도스와 BIT를 체결한 후 1999년 바레인, 카타르와 체결한 BIT를 제외하고는 기타 국가들과 신규로 체결한 BIT 및 수정한 BIT는 기존의 BIT와는 다르게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중재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1991년 중국-헝가리 BIT와 일부 BIT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분쟁을 ICSID 중재 또는 임시중재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인지 투자유치국 정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모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중국-캐나다 BIT와 일부 BIT는 외국인 투자자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16) 1998년 7월 중국이 바베이도스와 BIT를 체결하기 전에 단지 수용 보상액관련 분쟁에 대해서만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BIT는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불가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우크라이나, 폴란드,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캄보디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오만,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타지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터키, 파키스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카보베르데, 수단, 알제리, 짐바브웨, 모리셔스, 이집트, 가나, 쿠바, 자메이카,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 등 54개 국가와 체결한 BITs이다.

2. 중국 BITs에서의 최혜국대우조항 적용

1)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대상

(1) 투자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는 일반적으로 정의조항에서 투자에 대하여 자산기반(asset-based)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투자는 계약 일방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률과 법규에 따라 투자유치국 영역 내에 투자한 각종 자산을 가리킨다. 중국이 초기에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에서 “투자는 당사국의 일방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 영역 내에 각종 유형의 자산 또는 재산으로서, ① 동산,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과 같은 기타 관련 재산권, ② 기업의 주식, 채권, 지분과 기타 모든 형식의 지분, ③ 금전청구권 또는 기타 투자와 관련된 경제가치가 있는 행위청구권, ④ 공업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⑤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연의 탐사 또는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권리를 포함한다”고 투자의 정의를 약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체결된 BIT는 투자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체결한 중국-한국-일본 BIT 제1조는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유형의 자산으로서, ① 기업과 기업의 지점, ② 기업의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③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④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⑤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금전청구권 및 이행청구권, 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⑦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그리고 ⑧ 그 밖의 모든 유형 및 무형 재산,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리

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모든 관련 재산권을 포함하다”고 투자의 범위를 매우 상세하게 약정하였다.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에서 단지 ‘투자’에 대해서만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는 BIT는 1982년 중국-스웨덴 BIT, 1984년 중국-벨기에 BIT, 1984년 중국-노르웨이 BIT, 1985년 중국-이탈리아 BIT, 1985년 중국-오스트리아 BIT, 1986년 중국-스위스 BIT, 1988년 중국-말레이시아 BIT, 그리고 2000년 중국-이란 BIT가 있다

(2) 수익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s는 수익에 대하여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1988년 중국-일본 BIT와 같은 일부 BIT에서 수익은 투자재산에 의하여 생기는 가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주식 배당금,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라고 규정하였다. 1989년 중국-불가리아 BIT와 같은 일부 BIT에서는 수익을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이윤, 주식 배당금, 이자, 그리고 기타 합법적 소득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5년 중국-이탈리아 BIT와 같은 일부 BIT에서의 수익은 투자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생기는 이윤, 이자, 자본소득, 주식 배당금, 사례금, 그리고 기타 합법적 소득이라고 보았다. 또한 1995년 중국-오만 BIT 제1조 제5항은 “수익은 투자에 의하여 생긴 금액 또는 생길 금액,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주식 배당금, 사례금, 기술원조와 기술서비스 비용 또는 기타 각종의 약인(consideration), 그리고 재투자의 수익과 자본소득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고 수익의 범위를 폭넓게 약정하였다.

수익의 정의를 규정한 BIT를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모두 투자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며, 열거방식에 따라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이윤, 주식 배당금, 이자, 사용료, 그리고 기타 합법적인 소득을 포함한다고 수익의 범위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는 투자 또는 투자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한 조항에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중국-덴마크 BIT와 같은 일부 BIT¹⁷⁾는 “각각의 체결국은 그 영역 내에서 타방 체결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투자 또는 투자수익에 제3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4년 중국-핀란드 BIT와 같은 일부 BIT¹⁸⁾는 “일방 당사국은 영토 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수정된 중국-프랑스 BIT는 최혜국대우조항에서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으로 수익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으나, 동 협정의 제1조 제3항에서 “투자수익과 재투자 상황 하에서의 재투자수익은 투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와 같이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Fan Jian-Hong, 2000).

(3) 투자와 관련된 활동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¹⁹⁾는

- 17) 1985년 중국-싱가포르 BIT, 1985년 중국-태국 BIT, 1986년 중국-스리랑카 BIT, 1988년 중국-뉴질랜드 BIT, 1997년 중국-마케도니아 BIT,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 등이 있다.
- 18) 1985년 중국-네덜란드 BIT, 1985년 중국-쿠웨이트 BIT, 1994년 중국-아이슬란드 BIT, 1995년 중국-유고슬라비아 BIT,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1994년 중국-인도네시아 BIT, 1995년 중국-오만 BIT, 1995년 중국-이스라엘 BIT, 1996년 중국-사우디아라비아 BIT, 그리고 2006년 중국-인도 BIT 등이 있다.
- 19) 중국-덴마크 BIT, 중국-폴란드 BIT, 중국-불가리아 BIT, 중국-헝가리 BIT, 중국-포르투갈 BIT, 중국-그리스 BIT, 중국-우크라이나 BIT, 중국-몰도바 BIT, 중국-파키스탄 BIT, 중국-티기 BIT, 중국-키르기스탄 BIT, 중국-아르메니아 BIT, 중국-필리핀 BIT, 중국-카자흐스탄 BIT, 중국-투르크메니스탄 BIT, 중국-베트남 BIT, 중국-벨로루시 BIT, 중국-알바니아 BIT, 중국-크로아티아 BIT, 중국-가나 BIT, 중국-이집트 BIT, 중국-모로코 BIT,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중국-짐바브웨 BIT, 중국-알제리 BIT, 중국-에스토니아 BIT, 중국-슬로베니아 BIT, 중국-리투아니아 BIT, 중국-루마니아 BIT, 중국-키프로스 BIT, 중국-라오스 BIT, 중국-

‘투자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투자자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1984년 중국-핀란드 BIT, 1989년 중국-불가리아 BIT, 1994년 중국-루마니아 BIT, 그리고 1993년 중국-독일 BIT와 2003년 수정한 중국-독일 BIT에서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국 국내의 법률·법규 및 관련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투자자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983년 중국-독일 BIT 의정서 제2조에서 투자와 관련된 활동은 “투자의 관리, 운용, 사용, 그리고 이용”으로 제한하였다. 1995년 중국-오만 BIT 제3조 제2항은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그리고 처분”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²⁰⁾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제3조 제2항은 “일방 계약국은 영토 내에서 타방 계약국 투자자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취득, 처분, 그리고 기타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1985년 중국-이탈리아 BIT 의정

서 제2조는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한 국민의 입국, 체류, 그리고 여행”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BIT에 비하여 1988년 중국-호주 BIT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게 확대하였다. 동 협정 제1조 제6항은 “투자유치국의 법률 규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활동은 회사, 지사, 대리점, 사무소, 그리고 업무를 하는 기타 시설의 조직·경영·통제·유지·처분, 계약의 체결, 이행과 집행, 각종 재산의 취득, 사용, 보호와 처분, 그리고 공업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재산 및 자금의 차입, 주식의 매입과 발행, 외환의 매입과 판매를 포함하는 것이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중국-일본 BIT 제3조 제3항에서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열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규정하였다. 첫째, 지사, 대리점, 사무소, 공장 및 기타 업무활동에 적합한 시설의 유지, 둘째, 자신이 설립하거나 취득한 회사를 통제하고 경영하는 것, 셋째, 전문가, 기술자, 고급직원, 변호사, 그리고 기타 직원을 채용 또한 해고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이다. 1992년 중국-한국 BIT도 1988년 중국-일본 BIT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였다. 하지만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제3조 제7항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활동의 범위를 1988년 중국-일본 BIT처럼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중국-일본 BIT에서 규정한 네 가지의 유형 중 세 번째 유형을 배제하였다. 1988년 중국-뉴질랜드 BIT 제4조 제2항은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원료, 부재료, 동력, 연료 및 각종 경영과 생산, 재료의 구매, 판매, 운송”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2년 중국-캐나다 BIT는 “투자자 또는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운영, 경영, 유지, 사용, 향유, 매각 또는 투자의 그 밖의 처분”으로 규정하여 설립 전 투자활동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중국이 설립 전 투자활동에 대해 최혜국대우 적용을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Lee Ki-Pyeong, 2014). 2004년 개정된 중국-핀란드 BIT 제3조 제3항, 2011년 개정된 중국-우즈베키스탄 BIT 제4조 제1항도

타지키스탄 BIT, 중국-그루지야 BIT, 중국-호주 BIT, 중국-아제르바이잔 BIT, 중국-레바논 BIT, 중국-캄보디아 BIT, 중국-시리아 BIT, 중국-예멘 BIT, 중국-카타르 BIT, 중국-바레인 BIT, 중국-미얀마 BIT, 중국-북한 BIT, 중국-볼리비아 BIT, 중국-아르헨티나 BIT, 중국-나이지리아 BIT, 중국-수단 BIT, 중국-남아프리카 BIT, 중국-카보베르데 BIT, 중국-에티오피아 BIT, 중국-적도기니 BIT, 중국-마다가스카르 BIT, 중국-말리 BIT, 중국-콩고 BIT, 중국-우루과이 BIT, 중국-에콰도르 BIT, 중국-칠레 BIT, 중국-페루 BIT, 중국-자메이카 BIT, 중국-쿠바 BIT, 중국-바베이도스 BIT 등이 있다.

20) 2012년 중국-한국-일본 BIT 제1조 제5항은 1995년 중국-오만 BIT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캐나다와 유사하게 설립 전 투자활동을 최혜국대우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

외국인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인용하여 ISDs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우호적인 해결 방식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기체결 BIT는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ISDs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분쟁의 범위 변화에 따라서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제1단계(1982년 3월~1998년 6월)

중국은 1993년 ICSID 협정에 가입하기 이전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투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여 제3국과의 협정 중 분쟁해결제도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부터 1992년 사이에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분쟁에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분쟁에 대한 협상 등의 우호적인 해결책을 통해 해결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필히 투자유치국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한국 BIT, 중국-싱가포르 BIT 그리고 중국-뉴질랜드 BIT와 일부 BIT에서는 만약 투자자가 이미 수용 또는 국유화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을 현지 법원에 제소하였다면, 투자자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수용 보상액 이외의 기타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분쟁 쌍방이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중국-스위스 BIT와 같은 일부 BIT의 규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을 6개월 내에 우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 또는 쌍방 당사자가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기타 문제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직 투자유치국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993년 1월 7일 중국은 ICSID 협정 비준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하여 1993년 2월 발효되었다. 중국은 ICSID 협정 가입 당시 단지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하여 야기된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한해서만 ICSID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보하였다. 이는 중국이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하여 야기된 보상액과 관련된 분쟁을 ICSID 중재에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투자와 관련한 상기 이외의 기타 분쟁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 관할법원에 분쟁을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ICSID 협정이 중국에서 발효된 후, 중국은 1994년 타국과 체결할 BIT 협상을 위하여 BIT 모델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이 BIT 모델의 규정은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BIT와 유사하게 국제중재에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범위를 수용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동 모델은 수용에 대한 보상금액 이외의 기타 분쟁을 투자유치국의 관할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중국-인도네시아 BIT 제9조는 “체약 일방의 당사자와 타방 체약국 간에 체약당사자 타방의 영토 내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의 우호적 해결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만약 6개월 내에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타방 체약 투자유치국의 법률, 법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수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본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상 개시 후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는

21) 1992년 중국-한국 BIT 제9조 제3항 하단 “일방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방국가의 영역 안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 해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 그 분쟁은 중재기관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상설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이미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중국은 1993년 2월부터 1998년 6월 까지 외국과 체결한 모든 BIT에 수용에 대한 보상금액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²⁾ 이는 중국이 1993년 이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BIT와 유사하게 ISD에 일정한 기간 동안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국 법원이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분쟁의 발생 원인이 수용 보상액과 관련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중재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수용에 대한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을 투자유치국 관할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였다면 이 분쟁은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Ha Hyun-Soo, 2013).

1998년 이전에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투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가 BIT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인용하여 해당 분쟁과 직접 관련된 BIT가 제공하는 분쟁해결절차보다 더 유리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3국의 협정 중에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국제중재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동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Li Chao, 2017). 특히 중국은 ICSID 협정 가입 시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하여 야기된 보상액 관련 분쟁”에 한해서 ICSID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혜국대우가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태도를 보였다.

22) 예를 들어, 1993년 중국-알바니아 BIT, 1993년 중국-에스토니아 BIT, 1994년 중국-페루 BIT 그리고 1996년 중국-캄보디아 BIT 등.

(2) 제2단계(1998년 7월~현재)

1998년 7월 이후 중국은 최혜국대우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기존의 BIT와 비교하여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최혜국대우 적용범위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이 해외 투자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를 위해 분쟁의 범위를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서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8년 7월 중국이 바베이도스와 체결한 BIT의 제9조는 “체약 일방의 투자자와 체약 타방 간의 모든 투자분쟁은 투자자와 체약 타방 간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본 BIT의 제9조 제1항의 분쟁을 분쟁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분쟁과 관련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는 다음 두 곳의 중재판정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①

1965년 3월 18일 ICSID 협약의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관련 분쟁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②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재판정부. 이 규칙 중 중재인 지정 책임은 ICSID의 사무총장에게 있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 일방이 투자자에게 국제중재를 신청하기 이전에 국내 행정심판의 절차를 다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투자유치국의 관할법원)에는 본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중국은 바베이도스와 BIT를 체결한 이후 타국과 신규로 체결한 BIT 및 수정한 BIT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모든 투자분쟁은 당사자 간에 우호적 협상하여

23) 중국-콩고 BIT, 중국-보츠와나 BIT, 중국-키프로스 BIT, 중국-시에라리온 BIT, 중국-모잠비크 BIT, 중국-케냐 BIT, 중국-미얀마 BIT, 중국-보스니아 BIT, 중국-트리니다드토바고 BIT, 중국-코트디부아르 BIT, 중국-기아나 BIT, 중국-리트비아 BIT, 중국-우간다 BIT 등 BIT는 중국-바베이도스 BIT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결해야 하며, 6개월 내에 협상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다. 다만 분쟁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유엔국제무역법 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기타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임시중재판정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에서 수용 또는 국유화로 야기된 분쟁만을 국제중재를 신청한다고 제한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 투자자는 이 BIT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1998년 이후 체결한 BIT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Liang Yong, 2017). 예를 들어, Tza Yap Shum v. 페루 사건²⁴⁾에서 청구인인 홍콩 주민 Tza Yap Shum가 1994년 중국-페루 BIT상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1994 페루-콜롬비아 BIT 제12조에 “법적 성질에 관한 모든 분쟁을 ICSID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원용하여 페루 정부와의 분쟁을 ICSID에 중재 신청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ICSID 중재판정부는 각각의 최혜국대우조항은 그 자체가 개별화된(individualized)것이라고 여겼으며, 《비엔나 조약협약》 제31조의 해석규정에 따라 최선의 판단기준으로서 해당 조약에 관련된 모든 합의 또는 해당 조약에 관련된 모든 정식 문서상 표현된 당사자들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⁵⁾ ICSID 중재판정부는 1994년 중국-페루 BIT 제8조 제3항에서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단지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8조 제3항을 특별규정으로, Art. 3를 일반규정으로 보아 제8조 제3항의 ‘특정의미는 제3조의 최혜국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1994 페루-콜롬비아 BIT를 원용하여 분쟁을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

다(Li Ki-Pyeng, 2011). 이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최혜국대우조항이 ISDs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지만, 중국은 이후에 체결한 BIT에서 중재판정부가 자유재량권을 확대하지 않도록 최혜국대우조항이 투자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 중국-한국-일본 BIT 제4조 제3조는 “본조 제1항에 계약 제3자 또는 비계약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일방 계약국과 계약 제3자 또는 일방 계약국과 비계약국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제3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약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중국-캐나다 BIT 제5조 제3항은 “본 조 제1조와 제2조에 언급한 대우는 기타 국제투자협정 또는 무역협정의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2012년 중국-우즈베키스탄 BIT 제4조 제3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3)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예외

중국이 체결한 BIT에서 최혜국대우의 적용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경제동맹에 속해 있는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만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1992년 중국-카르키스탄 BIT와 같은 일부 BIT²⁶⁾에서 본 협정이 체결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지역경제동맹,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혜대우는 본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적용예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향후

24)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25)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Competence, Date of notice 19 June 2009, pp.206-208.

26) 1992년 중국-아르메니아 BIT, 1992년 중국-우크라이나 BIT, 1992년 중국-투르크메니스탄 BIT, 1993년 중국-타지키스탄 BIT 등이 있다.

합리적인 기간내에 참가할 수 있는 경제동맹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²⁷⁾ 1986년 중국-스위스 BIT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또는 지역경제동맹의 회원국 또는 준 회원국인 경우에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특혜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²⁸⁾ 1992년 중국-필리핀 BIT는 일방 당사국이 참가하는 지역적 협정,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구성을 야기한 조치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의 적용예외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5년 중국-싱가포르 BIT 제5조 제1항은 “동일한 지역 영역 내에 있는 제3국 또는 기타 국가와 경제, 사회, 노무, 공업, 그리고 금융 분야 등 특정 항목 내의 지역적 협력을 촉진하는 모든 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treaty) 또는 기타 관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에 속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만 특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2003년 수정한 중국-독일 BIT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기타 관세와 관련된 협정을 제외하고는 “일방 계약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법인에 게만 조세특혜, 면세, 감세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다른 계약국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법인가치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특혜대우를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²⁹⁾ 그리고 1984년 중국-노르웨이 BIT와 같은 일부 BIT³⁰⁾는 “과세와 관련한

국제협정 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과세특혜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의 적용 예외를 약정하였다. 하지만 1992년 중국-키르기스스탄 BIT와 같은 일부 BIT³¹⁾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인지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인지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단지 “과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기타 관세협정”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였을 뿐이다. 1988년 중국-뉴질랜드 BIT, 1994년 중국-자메이카 BIT와 같은 일부 BIT³²⁾는 “일방 계약국과 제3국 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IV. 중국의 ISDs에 최혜국대우 조항의 확대 적용과 관련한 대응책

1. 최혜국대우조항의 ISDs에 확대 적용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해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첫째, 중국의 해외투자자는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ISD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연평균 31.2%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7, 310.7억 달러로 중국의

스라엘 BIT,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 등이 있다.

31) 1992년 중국-아르메니아 BIT, 1992년 중국-카자흐스탄 BIT, 1992년 중국-투르크메니스탄 BIT, 1992년 중국-그리스 BIT, 1992년 중국-우크라이나 BIT, 1993년 중국-벨라루스 BIT, 1993년 중국-타지키스탄 BIT, 2001년 중국-나이지리아 BIT, 2004년 중국-핀란드 BIT, 2005년 중국-적도 기니 BIT, 2007년 중국-한국 BIT, 2011년 중국-우즈베키스탄 BIT 등이 있다.

32) 1994년 중국-인도네시아 BIT, 1997년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BIT, 1996년 중국-사우디아라비아 BIT, 1996년 중국-캄보디아 BIT, 1996년 중국-알제리 BIT, 1996년 중국-시리아 BIT, 2007년 중국-쿠바 BIT 등이 있다.

27)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 제5조 제1항은 “세관, 통화, 관세 또는 무역(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다)에 관한 지역적 협정, 그리고 향후에 체결할 이러한 지역적 협정”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BIT는 1984년 중국-노르웨이 BIT, 1988년 중국-말레이시아 BIT, 1992년 중국-한국 BIT, 1993년 중국-벨라루스 BIT,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1994년 중국-아이슬란드 BIT, 1997년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BIT 등이 있다.

28) 1986년 중국-스위스 BIT와 유사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BIT는 1992년 중국-그리스 BIT, 1992년 중국-유고슬라비아 BIT, 그리고 1996년 중국-모리셔스 BIT가 있다.

29) 2003년 중국-독일 BIT 의정서 제4조 제2항.

30) 1985년 중국-태국, 1995년 중국-아이슬란드 BIT, 1993년 중국-아랍에미리트 BIT, 1995년 중국-이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40.4%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자들은 정부의 '해외진출' 전략 및 '일대일로' 전략 등에 따라서 해외투자규모를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³³⁾ 또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지위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해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 간에 투자유치국으로부터 차별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체계가 미비한 투자유치국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큰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최혜국대우조항이 ISD절차에 확대 적용된다면, 중국 해외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관련 협정상에서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 법률에 규정된 행정, 사법상의 구제 절차를 포함한다. 투자유치국은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지구제 절차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해외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국제중재와 같은 제3자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의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투자유치국이 제3국과 체결한 BITs의 현지구제 절차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2) 중국정부에 미치는 영향

첫째, 국가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전환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각종 경제정책이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 조치는 타국과 체결한 투자협정과 충돌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제3국 협정의 해결절차에 원용하여 중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다면, 중국 정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은 1991년 중국-헝가리 BIT와 같은 일부 BIT에서 현지구제절차의 이행 없이도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 절차를 먼저 완료한 이후에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본협정의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1991년 중국-헝가리 BIT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현지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현지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를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국가주권 및 공공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둘째, 타국과 체결된 BITs가 무력화되고 분쟁해결제도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이 1998년 이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BITs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1998년 7월 바베이도스와 체결한 BIT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 BITs의 적용

33)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Ping An Life Insurance Company of China, Limited and Ping An Insurance (Group) Company of China, Limited v. Kingdom of Belgium ICSID Case No. ARB/12/29., Sanum Investments Limited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CA Case No. 2013-13., Tanzania Electric Supply Company Limited, ICSID Case No. ARB/10/20., Beijing Urban Construction Group Co., Ltd. v. Yemen, ICSID Case No. ARB/14/30.

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정부와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1998년 이후 체결된 BIT에 근거하여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국제중재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된 모든 BITs가 무력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제도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 중국의 분쟁해결절차에 최혜국대우조항 확대 적용과 관련한 대응책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BITs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면 최혜국대우조항을 근거로 제3국 협정의 ISD절차를 원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BITs 중에서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ISD절차를 적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모든 BITs가 무력화되고 분쟁해결제도에도 혼란을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지국 구제절차의 완료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지국의 구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Maffezini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현지국 구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공공질서에 속한다고 판정하였다.³⁴⁾ 또한 《ICSID 협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계약국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³⁵⁾ 중국은

1990년 이전에는 국제중재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 투자유치국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BIT는 현지국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Dan Wen-Hua, Zhang Sheng and Lao Zhi-Qiang, 2008). 하지만 중국은 1990년 이후 체결한 일부 BIT에서 현지국 구제절차의 이행 없이도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³⁶⁾ 그러나 국제투자는 개인 간의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자유치국의 국가주권 및 공공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더욱 유리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여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 수단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향후 체결 또는 수정하는 BIT에서는 투자유치국의 현지구제 완료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BIT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캐나다는 2004년 BIT 모델 제4조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은 본 협정 발효일 이전 유효하거나 체결한 모든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서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이 본 협정 발효 전에 체결된 모든 협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BITs는 최혜국대우조항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경제동맹, 그리고 이종과세방지협정 및 기타 관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체결 또는 수정하는 BIT에 외국인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

34) Emilio Agusti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of January 25, 2000, paras.62-63.

35) 《ICSID 협정》 제26조 “본 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것을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어떠한 구제수단도 배제하고 그러한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중재에의 동의조건으로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지역적 구제수단을 다 거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6) 1991년 중국-헝가리 BIT, 1993년 중국-벨로루시 BIT.

셋째,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최근에 중국은 신규 체결한 일부 BITs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이 ISD절차에 확대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BITs는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정부 또는 투자자가 피소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외교문서를 교환할 것을 제안한다(Zhou Geng-Sheng 2007). 외교문서는 국가 간 협정과 다르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특히 외교문서는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가 가능하며(Li Hao-Pei, 2003), 국제협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Zhou Geng-Sheng, 2007). 예를 들어, 2004년 Grid 사건에서 아르헨티나와 파나마 정부는 1996년 양국 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의 규정한 최혜국대우조항을 ISD절차에 확대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외교문서를 체결하였다.³⁷⁾ 이처럼 중국은 기 체결된 BITs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파나마 정부 간의 외교문서 교환 방식을 참조하여 BIT를 체결한 국가들과 ISD절차는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다”는 외교문서를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결론

최혜국대우는 협정상의 의무이지 국제관습법의 근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협정 체결국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국들이 BIT상의 최혜국대우 적용범위를 약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ISDs도 최혜국대우조항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협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최혜국대우를 ISD절차에 확대 적용한다면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여부의 불확실을 초래하는 등 계약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국들은 최혜국대우조항을 ISDs에 확대 적용할지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중국은 투자자가 최혜국대우조항을 ISD절차에 확대 적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1998년 이전에는 기본협정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하여 다른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 시기 중국이 체결한 BIT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상 또는 투자유치국 국내구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중재에 제기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수용 및 국유화로 인하여 야기된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 한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998년 7월 이후 중국은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기존의 BIT와 비교하여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최혜국대우 적용범위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이 해외투자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를 위해 분쟁의 범위를 수용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에서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으로 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확대 적용에 대한 태도 변화는 중국이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해외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유치국의 투자 환경, 법률, 그리고 정책 등의 변경으로 투자유치국 정부와 투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자본 수입국의 입장만 고려하여 최혜국대우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제한한다면 이는 국제투자분쟁관련 중재제도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물론 해외에 투자하는 중국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최혜국대우조항을 ISD절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자본 수입국과 자본 수출국이라는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최혜국대우조항을 ISD절차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국

37) National Grid plc v. The Argentine Rules, Decision on Jurisdiction, A June 20, 2006, para.71.

은 향후 체결 또는 수정하는 BIT에서 최혜국 대우조항의 적용범위, 투자유치국 현지규제 완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또한 최혜국

대우의 적용 예외로 기체결 BIT에는 최혜국대우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Dan, Wen-Hua, Sheng Zhang and Zhi-Qiang Lao (2008), "Is "Calvo doctrine" dea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5(2), 172-211.
- Fan, Jian-Hong (2000),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hina : Zhejiang University Press*.
- Ha, Hyun-Soo (2013), "A Study on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 between Investor and State in Chin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3(4), 29-53.
- Kang, Seung-Kwan (2010), "A Study on the Issue of the Scope of MFN Treatment:the Comparison of Siemens v. Argentina and Wintershall v. Argentina",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31, 241-267.
- Kim, Kyung-Bae (2010),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ope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in the FTA Investment Provisions Based on the Arbitral Award Cas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0(1), 109-131.
- Kim, Seok-Ho (2013),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FN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With respect to the its Applicability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Law Review*, 50, 213-235.
- Kim, Yeu-Sun and Young-Gi Oh (2010), "A Study on Most-Favored-Nations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19(2), 263-281.
- Lee, Ki-Pyeong (2014), A study on the draft of the China's BIT model and its existing Investment Chapters prior to the Korea-China FT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Lee, Ki-Pyeong (2011), "A Research on China's BITs: An Analysis on the Decision of Jurisdiction in Tza Yap Shum v. The Republic of Peru Case",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15, 143-172.
- Li, Chao (2017),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FN Clause i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3), 56-63.
- Li, HaoPei (2003), Introduction to the Law of Treaties, *China : Law Press*, 26-27.
- Liang, Yong (2017), "The Research on ISDS Cases Involvement with China : China's Experiences and Relevant Improvement Suggestions", *Chinese Review of International Law*, 98-116.
- Park, Seon-Uk (2010), "How to Treat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s under BITs: A Multilateralist Proposal", *Law Review*, 39, 335-358.
- Suh, Chul-Won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FN and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 Proposal for More Comprehensive and Coherent Framework",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53(2), 109-140.

- Qiao, Jiao (2011),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Favored-Nation clause i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BIT", *The Rule of Law Forum*, 26(1), 61-69.
- Zhou, Geng-Sheng (2007), Beijing Urban Construction Group Co. , Ltd. v. Yemen. ICSID Case No. ARB/14 /30., *China : Wuhan University Press, International Law (Volume 2)*, Camuzzi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2.
- Emilio Agusti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 Gas Natural SDG S. A. v. Argentinian. ICSID Case No.ARB/03/10.
- National Grid plc v. The Argentine Republic. Decision On Jurisdiction dated 20 June 2006.
- Ping An Life Insurance Company of China, Limited and Ping An Insurance (Group) Company of China, Limited v. Kingdom of Belgium. ICSID Case No. ARB/12/29.
-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 No. ARB/03/24.
- Sanum Investments Limited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CA Case No. 2013-13., Tanzania Electric Supply Company Limited. ICSID Case No. ARB/10/20.
- Salini Construttori S.p.A. and Italstrade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No.ARB/02/13.
- Suez, Sco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Interagua Servicios Integrales de Agua S. 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7.
-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 A. v. Mexico. ICSID Case No. ARB (AF)/00/2.
-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